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14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31.

발의자 : 윤준병 · 박용갑 · 박희승
정동영 · 허영 · 허종식
서영교 · 박민규 · 문대림
김태선 · 조계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및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, 교육비 지출 시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,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들은 고물가 · 고금리의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에 비해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, 명목임금이 상승해도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.

또한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해당 기준은 1974년에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어 50년이 지난 현재 자

녀들이 대학 진학 후 졸업 때까지 부모가 부양해야 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함.

이에 직장인들의 자녀교육 및 보육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12조제3호러목).

나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비과세 대상 급여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12조제3호머목).

다.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향하여 기본공제 기준을 현실화함(안 제50조제1항).

라.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,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를 초등학생과 음악·미술·무용 등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까지 확대함(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라목 중 “20만원 이하의”를 “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”로 하고, 같은 호 머목 중 “20만원 이내의”를 “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“20세 이하(20세)”를 “25세 이하(25세)”로 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300만원을”을 “500만원을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아동을”을 “아동 또는 초등학생을”로, “또는”을 “(음악, 미술, 무용 등 예능학원을 포함한다) 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식사대 관련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출산·보육 관련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한다.

제4조(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)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
률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
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
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	제12조(비과세소득) -----
1. · 2. (생 략)	-----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	1. · 2. (현행과 같음)
가. ~ 더. (생 략)	3. -----
러.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(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)가 받는 월 <u>20만원 이하의</u> 식사대	가. ~ 더. (현행과 같음) 러. -----
며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(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)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<u>20만원</u>	<u>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</u> 의 -----

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

1.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·
직계비속 · 형제자매 · 입양자
및 위탁아동(이하 이 호에서
“직계비속등”이라 한다)을 위
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
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 대
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
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
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
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
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
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
· 중 ·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
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
다.

가. ~ 다. (생 략)

라.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

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.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아동

<p>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 에 따른 어린이집, 「학원 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<u>또는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(학원 및 체육시설 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)</p>	<p><u>또는 초등학생을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(음악,</u> <u>미술, 무용 등 예능학원을</u> <u>포함한다) 또는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2. · 3. (생 략) ④ ~ ⑪ (생 략)</p>	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 ④ ~ ⑪ (현행과 같음)</p>